


의안번호	제 272 호
의결연월일	1995. 4. 7. (제 32 회)

의결사항	원안가결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1995. 3. 31.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2
----------	-----

제출연월일 : 1995. 3. 31.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안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에관한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3호, '95.2.6)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중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객석면적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객실과 객석면적으로 하고,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규정을 추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함(안 별표1의 제1호중 가목 및 나목).

나. 객실과 객석면적 33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안 별표1의 제1호중 나의2목).

다. 숙박업중 객실이 30실이상인 숙박업에서 객실이 7실이상인 숙박업소로 1회용품 무상제공 규제대상을 확대함(안 별표1의 제1호중 라목).

라.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에 대해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규정을 추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함(안 별표1의 제1호중 마목).

마. 도시락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안 별표1의 제1호중 사목).

바. 가정용품, 종합소매업,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등에서의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안 별표1의 제1호중 아목).

3. 참고사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른 제품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환경 67507-139('95.2.9)호와 관련]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의 과태료부과기준 제1호가목중 "객석면적"을 "객실과 객석면적"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나의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500	1,000

라목중 "객실이 30실이상인 숙박업"을 "객실이 7실이상인 숙박업소"로 한다.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사.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아.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1,000	2,000	3,000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현행				개정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이후
1.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동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5항)				1. (현행과 같음)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u>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1,000	2,000	3,000	가. <u>객실과 객석면적</u> <u>1회용품(이수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u>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위 반이후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위 반이후			
<u>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중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신 설)	1,500	2,500	3,000	<u>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주시개는 제외한다)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u>나.의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u>	(현행과 같음)					
								300	500	1,000

현		행			개		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위 반이후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위 반이후		
<p>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 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1) 일반목욕장업(공동탕, 가족탕, 한증탕)</p> <p>(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p>				<p>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쭉시개의 사용자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다.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1,000	2,000	3,000						
	1,500	2,500	3,000						

현				개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위 반이후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위 반이후
<p>라. <u>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증</u> <u>객실이 30실이상인 숙박업에서</u> <u>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p> <p>(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p> <p>(2) 여관 및 여인숙업</p>	1,500	2,500	3,000	<p>라.</p> <p>..... <u>객실이 7실이상인 숙박업소에서</u></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마. <u>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u> <u>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p>	1,500	2,500	3,000	<p>마. <u>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에서</u> <u>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u></p>			

현		행			개		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 반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 반이후		
바. <u>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 재사용제품을 진열·판매하는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2,000	2,500	3,000	<u>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바. <u>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u>사.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신 설)	2,000	2,500	3,000	<u>사.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u> <u>아.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대형점·도매타·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 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u>	1,500	2,500	3,000
				<u>아.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대형점·도매타·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 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u>	1,000	2,000	3,000

현		행			개		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위 반이후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위 반이후
2. (생 략) 가. (생 략) 나. (생 략)					<u>증권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u> <u>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u> <u>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u> <u>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u> <u>예술관련사업에서 합성수지로</u> <u>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u> <u>션)된 1회용광고선전물의 사용</u> <u>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u> <u>지 아니한 때</u>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주) 1~2 (생 략)

(주) 1~2 (현행과 같음)